

의안번호	제 163 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9년 4월 9일

#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4. 9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- 병설·부설·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장 위임사항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함
- 직속기관장 위임사항 중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

- 1) 교육장에게 위임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발령 사항 중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  -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사항 중 병설·부설·통합학교 내 겸임발령은 학교장에게 위임함

### 나.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

- 1)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학교 행정실 근무자의 겸임발령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적기 임용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함
  -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겸임발령

### 다.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

-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‘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’에 대하여 6급(상당) 이하로 그 범위를 지정함으로써, 부서 내 또는 분원(관)장에 대한 행정권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: 2019. 3. 8. ~ 2019. 3. 28.

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 중 “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”을 “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(병설·부설·통합학교 내 제외)·휴직”으로 한다.

제6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소속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학교 내 겸임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소속 6급(상당)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<u>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(6월 이상)·복직(6월 이상 휴직)·직위해제·과건·퇴직·대우공무원선발·의원면직·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·경징계</u></p> <p>7. ~ 37. (생략)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<u>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(병설·부설·통합학교 내 제외)·휴직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7. ~ 3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~ 11. (생략)</p>	<p>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의2. <u>소속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병설(병설유치원 포함)·부설·통합학교 내 겸임</u></p> <p>2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.</p>	<p>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1. (생략)</p> <p>2. <u>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(단, 「충청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직부여는 제외)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소속 6급(상당)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·보직부여</u>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 계 법 령

□ 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** [시행 2018.1.1.] [법률 제11212호, 2012.1.26 타법개정]

**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등)**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**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**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
**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**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□ **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** [시행 2017.6.14.] [대통령령 제27667호, 2016.12.13. 제정]

**제6조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**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학습활동, 진로지도, 강사 확보·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2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3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·보건·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
5.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
6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,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

□ **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** [시행 2019.3.19.] [대통령령 제29634호, 2019.3.19., 타법개정]

**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**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“행정권한”이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,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**지방공무원법** [시행 2018.9.21.] [법률 제15522호, 2018.3.20., 타법개정]

**제30조의3(겸임)**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, 특수 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,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□ **지방공무원임용령** [시행 2019.1.1.] [대통령령 제28705호, 2018.3.20., 일부개정]

**제7조의5(겸임)**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1.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

2.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

3.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,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4.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

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.

□ **지방공무원보수규정** [시행 2019.1.8.] [대통령령 제29480호, 2019.1.8., 일부개정]

**제31조(겸임수당)** ①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그 지급범위,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.